

# NYC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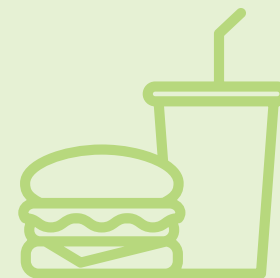
NYC Fair Workweek Law(공정 근로주법)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예측 가능한 근로 일정과 더 많은 근로 시간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 **이제 부당한 해고는 법률로 금지됩니다.** 특히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유 없이는 15% 초과 근로자 해고, 인원 감축 또는 근로 시간 감축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는 이 안내문을 NYC 내 근로 장소마다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.

##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법률적 정의

NYC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:

- 청소
- 조리
- 고객 서비스
- 음식 또는 음료 준비
- 매장 외 지역 배달
- 정기 유지보수 업무
- 보안
- 자재 또는 장비 재고 정리

해당 법률은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.



## 근로자의 권리

###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또는 근로 시간 감축 불가 (2021년 7월 4일 발효)

불법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한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근신 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재교육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근로 수준 미달인 근로자는 1년에 여러 차례 징계성 경고를 준 후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.

### 경제적 이유 없이는 인원 감축 불가 (2021년 7월 4일 발효)

인원 감축은 가장 오래 일한 근로자부터 순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.

### 신규 근로 시간은 인원 감축된 직원 또는 현재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

- 고용주는 매장 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새롭게 생긴 근로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.
- 고용주는 인원 감축된 직원이나 현재 직원이 신규 근로 시간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만 새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.



### 해고, 근로 시간 감축, 인원 감축 시 서면으로 설명 (2021년 7월 4일 발효)



### 장기적 근로 일정을 서면으로 명시

근로 일정은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매주 안정적이어야 합니다. 변경이 있으면 고용주는 변경된 정기 근로 일정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

### 근로 일정 변경 시 2주 전에 통지

근로 일정은 역일 기준 최소 7일 동안의 근로 시간을 보여줘야 하며, 근로자의 근로 일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(근로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변경 사항은 예외).



### “영업 시작/종료” 근로 시간에 대한 \$100 추가 임금 및 거부 권리

영업 시작/종료 근로 시간은 매장을 열고 닫는 연속된 근로 시간을 포함합니다. 수락 시 추가 임금을 받게 되며,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

### 14일 이전 통지가 준수되지 않은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및 추가 근로 시간 거부

근로 시간 변경 통지	추가 근로 시간 임금	근로 시간 무변경	근로 시간 감축 시
14일 미만 통지	변경당 \$10	변경당 \$10	변경당 \$20
7일 미만 통지	변경당 \$15	변경당 \$15	변경당 \$45
24시간 미만 통지	변경당 \$15	변경당 \$15	변경당 \$75

근로 시간 변경에 동의해도 추가 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

#### 추가 임금 미발생 상황:

- 근로자 또는 고용주 자산에 대한 위협, 수도/가스/전기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, 대중교통 폐쇄, 화재/홍수/기타 자연재해, 정부에서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해 매장을 닫은 경우.
-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근로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.
- 다른 근로자와 근로 시간을 바꾼 경우.
-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해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.

## 보복 금지

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 보복을 당한 근로자는 즉시 DCWP에 연락하십시오.

## 이의 제기

법률 집행은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, DCWP)에서 담당합니다. 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전화: 311 (NYC 외 지역은 212-NEW-YORK)에 전화해 “Fair Workweek Law(공정 근로주법)”이라고 얘기
- 이메일: [OLPS@dca.nyc.gov](mailto:OLPS@dca.nyc.gov)

DCWP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(법률로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).

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DCWP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